http://dx.doi.org/10.14400/JDC.2014.12.12.13

기사삭제 요구권과 잊혀질 권리 – 기사삭제의 인정기준에 관한 논의

홍숙영
힌세대학교 미디어영상학부

Right to delete and Right to be forgotten -Discuss on the condition of the right to delete

Hong, Sook-Yeong
Dept. of Media and Image, Hansei University

요 약 최근 유럽사법재판소(ECJ)에서 '잊혀질 권리'를 인정한 판결이 내려지면서 '잊혀질 권리'가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잊혀질 권리' 가운데 '기사삭제권'을 중심으로 잊혀질 권리의 인정기준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의 민감성 여부, 합리적인 평균인에 대한 불쾌감정 자극 여부, 기사작성의 목적, 해당 기사의 기록물로서의 가치,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알 권리보다 프라이버시 권리 보호가 더 중요해지게 되었는지 여부, 공적 주체인지 여부, 사실에 반하는 기사인지 여부 등을 기사삭제권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제(PIA:Privacy Impact Assessment)의 도입, 블라인드 제도의 보완을 통한 활용, 현재 다원화되어 있는 기사삭제 제도의 통합 및 언론중재제도의 개선을 통한 적극적 활용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주제어 : 기사삭제권, 잊혀질 권리, 인정기준, 언론중재제도, 개인정보

Abstract The right to be forgotten is a world-wide issue after the decision of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which accepted that right. This essay discusses about the guide lines for protecting the right to delete, a category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I classified those guide lines as follows : (1) sensitivenes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2) offensiveness to reasonable and ordinary people, (3) intention of writing the article, (4) value of historical record, (5) importance of privacy comparing with right to know with time flow, (6) public figure, (7) article based on fact or opinion. To effectively protect right to be forgotten and delete, we have to consider Privacy Impact Assessment, using blind system, unification of multiple institutions, and reforming press arbitration system.

Key Words : right to delete, right to be forgotten, guide lines, press arbitration system, personal information

1. 서론

2014년 5월 13일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이용자들이 개인정보 침해 불만을 접수할 경우 당위성을 따져 필요하다면 해당 콘텐츠를 검색결과에서 삭제해야 한다는 판

Received 26 September 2014, Revised 28 October 2014
Accepted 20 December 2014
Corresponding Author: Sook-Yeong Hong
(Dept. of Media & Image)
Email: marylou@naver.com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Mario Costeja Gonzalez라는 스페인 변호사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1998년에 있었던 자신의 채무와 관련한 기사가 2009년까지 구글에서 그대로 검색되는 것을 보고 구글측에 채무 문제가 다 해결되었으니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구글은 이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고, 이에 Gonzalez는 소송을 걸어 결국 승소판결을 받아냈다[1]. 이 판결은 유럽 내 28개국에서만 유효한 판결이지만 인터넷상 정보에 대한 개인의 기사삭제 요구 권리를 인정한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그 파장이 크며 구글뿐 아니라 각종 포털회사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2].

이처럼 개인의 정보삭제권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유럽 법원에서 이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면서 정보삭제와 관련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언론과 관련하여 기사의 삭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정보의 삭제권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보호와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해결 방법이 있으며 각종 포털에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시행하는 일명 '블라인드'제도'가 있는데 이는 개인이 삭제를 요청할 경우 해당 콘텐츠를 우선 보이지 않게 처리하는 것이다[3]. 그러나 언론중재제도는 3개월에서 6개월까지의 최근 기사에 대해서만 삭제요구가 가능하며, 블라인드 제도의 경우 외국 포털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잊혀질 권리의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인 기사삭제 요구권과 관련해 국내에는 통합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따라서 이를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 기준과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사삭제와 관련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기사삭제를 요청해 이것이 수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잊혀질 권리'와 관련한 국내외 연구

'잊혀질 권리'는 2010년 유럽연합의 개인정보 보호방침으로 인해 주목받기 시작하였는데, 미국은 이 개념과 관련해 개인의 사생활권을 더 중시하는 유럽과는 달리 '표현의 자유에 무게중심을 두었으나[4] 근래 들어 이러한 입장이 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는 미국인들의 다수(55%)가 잊혀질 권리의 보장에 찬성한다는 결과도 있으며[5], 종래 타인의 과거 행적을 뒤지기 위해 도서관으로 달려가 마이크로필름을 뒤져야 했던 실무적인 모호함(practical obscurity)이 사라진 현대의 검색엔진 시대에는 잊혀질 권리 개념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유력한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6]. 따라서 '잊혀질 권리'에 대한 미국인들의 인식 역시 유럽식으로 변화하여 가고 있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잊혀질 권리의 개념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정립되어 왔으며,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의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그 정보를 제거하거나, 본인에 관한 정보가 본인에게 해를 미칠 때 이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전과기록 등 공적 데이터의 삭제권 등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다. 인터넷시대에 들어와서 잊혀질 권리는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정보가 비록 그 내용이 정당하더라도 개인의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재산권에 해를 입힐 경우, 혹은 정신적 고통을 안겨 주는 경우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잊혀질 권리와 관련한 국내 연구들은 잊혀질 권리의 개념이나 법적인 고찰, 피해 사례, 구제방안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는데, 개인정보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가 충돌할 경우 해결 방안에 대한 연구[7], EU와 한국의 잊혀질 권리의 개념에 대한 비교 연구[8], 과거 기사로 인한 피해와 대안[9] 등의 연구들이 있다. 또한 개인정보의 기술적 보호시스템(PET:Privacy Enhancing Technology)의 도입과 함께 법·제도에 개인정보 보호의 개념을 기본으로 하는 Privacy by design 개념의 확립, 온라인 추적 차단기(Do-Not-Track) 설치 및 잊혀질 권리의 보호 등을 주장한 연구도 있다[10].

이러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는 기준을 제시하거나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잊혀질 권리 가운데 '기사삭제 요구권'을 중심으로 개인이 기사의 삭제를 요청할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삭제권을 인정할 것인지에 관해 제안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현재 분산되어 있는 기사삭제의 인정 기관과 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관련법의 개정을 통한 개인의 권리 보장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한다.

3.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2013년 1월1일부터 2014년 4월 23일까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및 중재사건 처리 일지를 중심으로 잊혀질 권리의 하나인 기사삭제 요청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내용을 유형별로 분석하며, 기사삭제 요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기사삭제 요구권을 인정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설정되어야 할 것인가?
연구문제 2. 기사삭제 요구권의 인정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연구문제 3. 기사삭제 요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 방안은 무엇인가?

4. 연구결과

4.1 기사삭제 요구권의 인정기준

현재 우리나라 대법원은 기사삭제의 기준에 대해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기사삭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기사로 인해 현재 원고의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두 가치를 비교·형량하면서 판단하면 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12]. 그러나 이러한 기준만으로는 잊혀질 권리와 관련한 기사삭제 청구를 실제로 받아들일지의 여부를 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더욱이 우리 법제가 ‘잊혀질 권리’ 개념 자체를 명문화하고 있지 않으면서 개별법령에서 개별적인 삭제요구권을 규정하는 형태로 ‘잊혀질 권리’를 규정하고 있어 미국의 입법례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13] 잊혀질 권리와 연결되는 기사삭제 요구권의 인정 기준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나아가 자율규제를 근간으로 하는 미국형의 경우와 달리 정부주도의 규제형태를 띄고 있는 우리의 개인정보 보호법을 감안한다면[14] 기사삭제 요구권의 수용 여부에 관한 기준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기사삭제권의 기준을 설정하는 주된 목적은 개인정보 삭제 요구권으로 대변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정보처리자의 영업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다른 헌법적 가치와의 조화에 있다[15]. 이는 개인정보를 ‘전용 신원 정보’, ‘온라인 기록 정보’, ‘라이프 스타일 정보’, ‘통용 인적 정보’로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로 공개 범위와 식별 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구분한 종래의 연구와[16] 차별화된다.

한편 EU Regualtion Article 1.7은 개인정보 삭제 요구권의 인정 기준으로, (1) 해당 정보가 수집·처리된 당시의 목적과 관련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2) 해당 정보의 사용에 동의한 자가 추후 동의를 철회한 경우 (3) 정보이용자가 해당 정보에 대해 정당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그 정보처리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거나, 정보주체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가 정보이용자의 이해관계를 넘어설 때 (4) 기타 사정들을 고려할 때 해당 정보의 처리가 EU Regulation에 위반될 때 등을 제시하고 있다[17]. 그러나 EU Regulation이 인정하는 이러한 기사삭제 요구조건도 기사삭제 요구권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자는 이전 연구에서 잊혀질 권리와 표현의 자유가 충돌할 때 해결 기준으로 (1) 해당 기사가 갖는 역사적 기록물로서의 가치, (2) 기사 작성의 목적, (3) 해당 게시물의 창작성, (4) 문제된 개인정보의 민감성, (5) 공적인 인물에 관한 정보인지 여부 등을 제시하였다[11]. 이를 토대로 연구자는 선행 연구들에서 제시한 기준 및 EU Regulation에서 제시한 인정 기준, 국내의 상황과 기사삭제 요구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기사삭제권 인정기준을 수정·보완하였다. 이에 따라 기사삭제 요구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해당 개인정보가 민감 정보이거나, 합리적인 평균인의 불쾌감을 자극하는 내용이거나, 기사 작성 목적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경우, 해당 기사의 기록물로서의 가치가 미미하거나 없는 경우, 기사 작성 이후 시간의 경과에 의해 공중의 알 권리보다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가 더 중요해진 경우, 공적인물이 아닌 대상에 대한 기사인 경우, 사실에 반하는 허위 기사인 경우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와 반대의 경우라면 기사삭제 요구권은 부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사 삭제의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1) 개인정보의 민감성 여부, (2) 합리적인 평균인에 대한 불쾌감정 자극 여부, (3) 기사작성의 목적, (4) 해당 기사의 기록물로서의 가치, (5)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알 권

리보다 프라이버시 권리 보호가 더 중요해지게 되었는지 여부, (6) 공적 주체인지 여부, (7) 사실에 반하는 기사인지 여부 등이다. 이러한 기준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한 내용인 잊혀질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그로 인해 표현의 자유에 찬물을 끼얹는 효과(chilling effect)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18].

4.2 기사삭제 요구권 행사 내용의 유형 및 적용

본 연구에서는 2013년 1월 1일부터 2014년 4월 23일까지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된 언론중재 신청사건을 앞서 제시한 기사삭제 요구권 인정 기준의 각 카테고리 별로 정리하고 분석하였다. 이는 언론중재위의 조정 및 중재 사건 처리 일지를 근거로 한 분석으로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특징적인 것은 현재 대부분의 언론중재 신청 사건이 사실에 반하는 보도임을 이유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2013년 12월 19일 언론중재위에 포털을 상대로 신청된 사건 282건(조정 221건, 중재 61건) 중 정정보도 청구는 78건(조정 54건, 중재 24건)으로 전체의 27.6%를 차지하고 있다. 위 수치에 허위사실 보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나 추후보도 청구 사건 수까지 합하면 언론중재 신청사건의 절대 다수가 사실에 반하는 기사를 게재하였음을 이유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반론보도 청구건수가 4건에 불과하여 전체의 1.42%에 그치는 점에서 보아도 분명하다. 따라서 사실에 합치하는 기사이지만 기사게재일로부터 시간이 오래 경과되어 이제는 프라이버시권이 언론의 자유보다 더 중요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한 잊혀질 권리 본연의 주장을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현행 언론중재법이 잊혀질 권리의 보장에 미흡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따라서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4.2.1 개인정보의 민감성 여부

사례: 교통사고 관련 인터뷰를 하면서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인의 초상을 방송해 피해를 입었다는 언론중재 신청

분석: 개인의 옷차림이나 얼굴모습, 신체부위의 전부나 일부, 체재 위치, 건강 상태, 인적 동일성에 대한 정보 등은 한 개인의 가치관이나 취향, 생활수준 등을 보여 줄 수 있는 민감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민감한 정보를 다룬 기사에 대해 해당 정보주체의 기사삭제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광범위하게 인정해 주어야 한다.

민감정보는 초상권과 함께 성명권, 음성권 등을 포함하는데, 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얼굴을 촬영하여 보도하거나 SNS를 통해 모 연예인과의 결별 사실을 공개한 여성의 실명을 보도한 경우 등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보도하였다면 묵은 기사라고 하더라도 해당 기사에 대한 삭제를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인의 학력이나 범죄경력, 병력 역시 민감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신청인이 형사판결에 따라 공공근로하는 모습을 동의 없이 보도함으로써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라는 민감정보를 무단 보도한 사례, 뇌염을 독감으로 오진한 의료진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뇌염 후유증 및 장애를 구체적으로 보도한 뉴스 등은 신청인들의 범죄기록, 건강상태를 공표한 것이다. 개인의 근무처나 집주소 등은 개인의 인적 동일성을 나타내는 정보로 무단히 공표되었을 때 악용될 여지가 충분한 민감정보에 해당한다. 무속인인 신청인의 주거지를 사전 허락 없이 무단촬영하고 신상을 공개한 기사에 대해서도 기사삭제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개인의 상업적 신용에 관한 보도 역시 민감정보를 보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대리운전업체 불공정행위 수사 촉구 기자회견에 관한 보도에서 신청인들의 업체 상호명이 노출되어 피해를 입었다거나, 불법피부미용시술 관련 보도를 하면서 신청인 가게의 상호명, 전화번호 등이 노출되어 노출해 피해를 입었다거나, 범죄관련 보도에 신청인이 운영하는 매장 및 직원의 얼굴이 노출되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서 한 언론중재신청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4.2.2 합리적인 평균인에 대한 불쾌감정 자극 여부

사례 : 신청인 학교의 교사가 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고 인격을 모독한 행위가 있었다는 보도에 대한 언론중재 신청

분석 : 교사가 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준다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에 기반 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교사나 그 교사가 소속된 학교의 주관적인 입장뿐 아니라 합리적인 상식을 가진 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도 불쾌감정을 자극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사실에 기반 하지 않고 이러한 보도를 한 것이라면 해당 기사에 대한 삭제요구권을 인정해야 한다.

대학교내 여학생 화장실에서 발생한 유사 성추행관련 사건의 피해자인 신청인이 취재기자에게 기사화를 거부하였음에도 사건을 지나치게 흥미위주로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언론중재 신청의 경우 해당 사진 또는 기사의 내용이 합리적인 평균인의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것이어서 기사삭제 요구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신청인이 전라로 연기하는 모습을 여과 없이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언론구제 신청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평균인의 건전한 성적 감정을 자극하는 보도라고 보아 기사삭제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4.2.3 기사작성의 목적

사례: 신청인과 남자친구 간 진행 중인 소송사건에서 신청인의 형사처벌이 확정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는 보도에 대한 언론중재 신청

분석: 해당 언론중재신청인과 남자친구 사이에 진행된 소송사건의 진행경과는 공적인 목적과는 무관한데도 이를 기사화했다면 그것은 순전히 신청인의 사적 생활영역을 드러내 대중의 관음증을 충족시키려 한 의도가 개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해당 기사가 삭제되지 않고 인터넷에 디지털 정보로 떠돌아다닌다면 신청인에 대한 불특정 다수인들의 사회적 평가(reputation)는 가혹하게 신청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19]. 유명 언론인이 남편과 별거 중 외도사실이 발각되어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거짓 루머를 신청인의 흐릿한 사진과 함께 보도한 경우, 신청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했을 뿐만 아니라 마치 특정인과 내연관계에 있었던 것처럼 보도한 경우, 성추행 피해자인 신청인이 돈을 노리고 접근했다는 가해자의 주장을 보도한 경우, 신청인이 갑작스런 결별에 앙심을 품고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상대방의 차량 등을 손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는 보도 등에 대한 언론중재신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사적인 영역에 대해 지나치게 흥미위주로 추측이나 상상을 가미하여 작성한 보도는 공익과는 무관하며 오히려 수용자를 자극하여 기사의 주목도를 높이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개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는 이러한 보도에 대해서는 기사삭제권을 인정해야 한다.

4.2.4 해당 기사의 기록물로서의 가치

사례: 신청인 소유 임야가 명의신탁한 것을 상속받은 것임에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보도에 대한 언론중재 신청

분석: 임야의 소유권이 신청인이 아닌 제3자에게 있는지 여부는 순전히 개인적인 재산 문제로서 공적인 관심사가 될 수 없다. 그런데도 이를 기사화한 것은 전혀 공적 기록물로서의 가치를 찾아볼 수 없다. 또한 개인인 신청인이 지위를 이용해 회사의 법적 책임을 후배에게 강요하고 회사수익을 챙긴다는 보도, 개인인 신청인이 건축물을 불법으로 증축하고, 이웃 주민의 땅을 빼앗는 등 문제가 많다는 식의 보도 역시 개인들 간의 분쟁을 다룬 내용에 불과하며 이는 기록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들의 경우 신청인의 기사삭제 요구권을 인정해야 한다.

4.2.5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알 권리보다 프라이버시 권리 보호가 더 중요해지게 되었는지 여부

사례: 금융사 간부인 신청인들이 업무상 배임 등을 저질렀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조사결과 무혐의 처분이 되었다는 언론중재 신청이 있는 경우

분석: 신청인들에 대해 실정법 위반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잡고 검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한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사실과 부합된다. 그러나 수사개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해당 기사에 대한 삭제

요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시간의 경과 자체만을 이유로 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 주고자 하는 것이 잊혀질 권리의 핵심이기 때문이다[20]. 그런 의미에서 잊혀질 권리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과거 사건에 대해 침묵을 누릴 권리를 포함한다[21]. 수사개시 및 보도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후 검찰의 조사결과 마침내 혐의 없음 처분까지 내려졌다면 신청인들과 관련한 기사는 삭제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법정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경우 추후 보도가 된다 하더라도 이전의 기사는 개인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삭제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일반인의 알 권리보다 신청인의 프라이버시 보호가 더 중대해졌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해당 기사를 삭제할 수 있다.

4.2.6 공적 주체인지 여부

사례 : 신청인이 막말 국회의원이라는 신문보도에 대한 언론중재 신청

분석 : 국회의원이라는 공적 인물에 대한 보도에 있어서는 권력의 주체를 감시해야 할 언론의 기능을 고려하여 언론의 자유를 보다 중시해야 한다. 따라서 위 사례와 같은 기사내용에 대한 삭제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구글을 상대로 한 유럽사법재판소 최근 판결도 공적 생활에 관련된 개인 기사에 대한 삭제 요구권에 대해서는 공중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22]. 공적 인물인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나 통상적인 행위는 유권자들의 지대한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으므로 기본적인 취재활동에 근거하여 보도한 기사에 대해 기사삭제 요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언론 자유에 대한 억압이 될 우려가 있다. 국회의원인 신청인이 국정감사에서 음주 질의를 벌여 국감이 파행으로 끝났다는 보도의 경우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기사삭제 요구를 부정해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인 신청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는데도 시간을 벌기 위해 상고를 제기해 재선거 일정에 차질을 두고 있다는 보도에 대한 기사삭제 요구도 인정해주기 어렵다고 하겠다.

공적인물인지의 여부는 신청인이 수행하는 사회적 역할이나 지위, 해당 기사가 다룬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단지 해당 인물이 공적 영역에 종사하고 있다고 해서 당연히 공적인물로 보고 언론의 자유를 중시해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공무원인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공개하고, 신청인이 민원인의 상담을 거부하고 불친절하게 응대했다는 보도에 관한 언론중재신청은 해당 보도의 내용이 개인의 초상권을 무단히 침해한 것이고, 보도사실도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므로 기사삭제 요구권을 인정할 사안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공적 인물에 대한 보도가 허위사실에 근거하고 있을 때에도 기사삭제 요구권을 인정해야 한다. 해당 공적 인물의 범죄사실과 관련된 보도라면 그 보도내용의 진실성을 엄격하게 심사하여 허위 보도를 한 경우에는 기사삭제 요구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4.2.7 사실에 반하는 기사인지 여부

사실에 관한 보도인지 여부는 사실과 평가가 해당 기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 이 범주내에서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기사는 사실과 평가의 두 요소를 중심으로 (1) 주로 평가를 기반으로 한 보도 (2) 사실을 기반으로 한 평가적 보도 (3) 주로 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보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례1(평가적 보도): 학교 영양사인 신청인의 권력남용으로 조리원이 고충을 겪고 있다는 보도를 대상으로 한 언론중재 신청

분석: 고등학교 영양사의 지위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인지, 그의 업무수행이 권력을 남용한 것인지, 조리원의 영업활동이 고충에 해당하는지, 영양사의 업무수행과 조리원의 고충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은 보는 사람에 따라 의견을 달리할 수밖에 없는 매우 평가적인 항목이다. 그런데도 고등학교 영양사인 신청인의 권력남용으로 조리원이 고충을 겪고 있다는 보도는 매우 평가적인 보도일 뿐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객

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보도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신청인의 학교가 관리자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보도내용도 도덕적 해이나 비정상적 운영이라는 개념 자체가 불명확하여 다분히 평가적인 보도에 그치고 있다. 제약회사인 신청인의 제품이 광고와는 달리 실제로는 피로회복에 효능이 없다는 주장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는 언론중재신청에 대해서도 같은 분석을 할 수 있다. 특정 제약회사의 의약품을 사용하여 피로회복이 되는지 여부는 개인마다 의견을 달리할 수밖에 없는 매우 주관적인 사항에 속하는데도 그러한 의견을 보도한 것이므로 기사삭제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사례2(사실에 기반한 평가적 보도):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 경사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과실이 신청인에게 더 많은 것처럼 보도한 기사를 삭제해 달라는 언론중재 신청

분석: 사실에 관련된 보도내용과 평가에 관련된 보도내용이 뒤섞여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의 평가내용이 사실에 기반한 경우라면 기사삭제 요구권을 쉽게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맥락을 고려하여야 한다. 교통사고에 관련된 각 당사자 중 누구의 과실이 많은지는 그것을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보도는 엄밀히 말하면 사실에 관한 보도라기보다 사실을 기반으로 하여 평가를 내린 기사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과실이 신청인에게 많은지 여부를 신청인의 주관적인 의사에 따라서만 결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해당 기사의 보도내용이 사실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신청인 단체가 차기 회장 선거를 임의로 지연시키는 등 파행 운영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므로 이를 정정해 달라는 청구도 단체 내부의 파행 운영 여부가 보는 사람에 따라 판단을 달리할 수 있는 영역이므로 이를 사실에 반하는 보도라고 할 수 없다.

사례3(사실적 보도): 신청인이 박사학위 취득자격 미달임에도 불구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은 박사학위심사위원장과 모종의 거래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는 언론중재 신청

분석 : 신청인이 박사학위 취득 자격자인지 여부는 해당 대학의 내규나 성적·학위 증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로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그런데도 그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이러한 보도를 하는 것은 사실에 반하는 보도라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신청인 회사가 무단으로 상가를 전대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 역시 관련 임대차 당사자들이 만든 계약서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그 사실성 인정여부를 용이하게 판단할 수 있다. 신청인이 유통기한을 허위 표시해 유통한 것으로 적발되었으나 수사 결과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사유에 근거한 언론중재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식품의 실질적인 제조일자 및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유통기한과의 대조에 의해 사실여부를 용이하게 판별할 수 있다. 모 대학 학교법인과 대학본부의 내홍으로 인해 감사원 특별감사를 받게 되었다는 인터넷 신문기사도 감사원의 감사여부를 쉽사리 사실 확인할 수 있으므로 허위 기사로 인정되면 기사삭제 요구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4.3 기사삭제 요구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기사삭제 요구권의 보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언론인들이 스스로 프라이버시 보호지침을 수립하고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개인의 잊혀질 권리 등 프라이버시를 사전적으로 보호할 뿐 아니라 언론사의 사후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받는 길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제(Privacy Impact Assessment, PIA)를 도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이는 '개인데이터를 취급하는 시스템, 사업, 서비스 등에서 프라이버시에 대한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프라이버시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운용면, 기술면에서의 대책을 강구할 일련의 프로세스'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에서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개인정보영향평가를 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는 점을 [23] 참고할 수 있겠다[10].

'블라인드 처리'도 기사삭제 요구권 보장을 위한 제도로 논의될 수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에 의하면, 명예훼손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는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를 삭제 또는 반박 내용의 게재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서비스 제공자는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 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임시조치'란 임시로 글 게재를 중단하는 조치로, 글을 삭제하는 것은 아니고 기술적으로 블라인드 처리를 함으로써 일정 기간 동안 이용자들의 접근을 금지하는 것이다. 각 ISP(Internet Service Provider)에 따라 조금씩 상이한 임시조치 및 재게시 제도를 갖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3 (임의의 임시조치) 조항에 의하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운영 ·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통지 없이도 사업자의 모니터링을 통한 임시조치가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있다[24]. 그러나 블라인드 제도가 외국 포털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어 기사삭제 요구권 보장에 미흡하며, 국내 포털과 비교하여 형평에도 반하는 문제가 있다.

특히 기사삭제 요구권과 관련한 분쟁이나 갈등의 효율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현재 행정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개인정보보호 위원회를 이용하기보다는 현행 언론중재제도를 활용하여 제도의 통일성을 꾀할 수 있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언론중재의 내용으로 최근 기사뿐 아니라 과거의 기사를 포함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인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기사의 삭제, 정정, 반론 보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청구기간의 제한도 삭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언론중재제도에 의해 잊혀질 권리의 하나인 기사삭제 요구권을 진정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언론중재위원은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언론학자, 전직 언론인 등 언론와 법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재제도의 체계가 잘 갖춰져 있으므로 언론중재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잊혀질 권리의 보장에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기사전체의 삭제보다 기사 내용의 일부 정정이 더 적절한 사건도 있을 수 있다(이른바 "깨끗한 석판")[25]. 잘못된 부분에 대한 일부 삭제나 정정, 혹은 반론 보도 등을 통해 기사의 오류나 문제점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기사삭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5. 결론

디지털 정보의 막강한 영향력을 절감하면서 사람들은 이제 정보의 수정과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최근 유럽사법재판소(ECJ)의 '잊혀질 권리'를 인정한 판결에 대한 파장이 확산되면서 이는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관련한 제도의 마련과 법 개정 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잊혀질 권리와 관련한 선행연구에서 연구자는 현행 언론중재위원회법의 한계를 지적하고 언론중재위원회법의 일부 개정을 통한 권리의 보호를 주장하였다.

후속 연구인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한층 발전시켜 잊혀질 권리 가운데 '기사삭제권'을 중심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된 신청인들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1) 개인정보의 민감성 여부, (2) 합리적인 평균인에 대한 불쾌감정 자극 여부, (3) 기사작성의 목적, (4) 해당 기사의 기록물로서의 가치, (5)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알 권리보다 프라이버시 권리 보호가 더 중요해지게 되었는지 여부, (6) 공적 주체인지 여부, (7) 사실에 반하는 기사인지 여부 등을 기사삭제권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한편, 기사삭제와 관련하여 현행 제도의 개선 방안으로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제(Privacy Impact Assessment, PIA)를 도입하는 것과 블라인드 제도의 보완을 통한 활용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현재 다원화되어 있는 기사삭제 제도의 통합과 언론중재제도의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향후 본 연구에서 제시한 기사삭제의 인정기준이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과 중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잊혀질 권리' 가운데 핵심 권리인 '기사삭제 요구권'을 인정하고 보장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갖추는데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안으로 제시한 PIA 제도의 도입과 블라이드 제도의 보완 및 언론중재제도의 개선방안 등은 기사삭제권을 보장하기 위한 통합적인 시스템 마련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REFERENCES

[1] D. Hakim, Right to be forgotten hard to keep:Despite E.U. court ruling, erasing someone's digital trail creates challenges, International New York Times, pp. 10-13, 2014.

[2] H. K. Lee, A Review on the right to be forgotten-focusing on the decision of ECJ, Law & Technology, Vol. 10, No. 3, pp. 3-23, 2014.

[3] W. S. Im, The first admission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in ECJ, Donga-Ilbo, May 17, 2014. http://news.donga.com/3/all/20140516/63537611/1

[4] P. Clarence, No right to be forgotten in U. S, Telegraph Herald, May 23, 2014.

[5] PR Newswire Association LLC, Americans would support 'right to be forgotten', PR Newswire, June 03, 2014.

[6] M. Dowd, On the right to be forgotten. Telegraph-Journal, May 27, 2014.

[7] S. G. Hwang. Legal Problems of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Press Reporting, Media and Law, Vol. 2, pp. 168-198, 2003.

[8] U. B. Go, G. H, Choi, J. I. Lee, The difference of the concept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between EU and Korea, Communication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Scientists and Engineers, Vol. 30, No. 2, pp. 34-41, 2012.

[9] J. J. Lee, B. G. Gu, Toward the Proper Resolution of the Problems Caused by Unerasable Old News Articles on the Internet, Journal of Korean Broadcasting, Vol. 22, No. 3, pp. 172-212, 2008.

[10] S. Y. Cha, Study on Big Data Circumstance and Privacy Protection., Study of .IT and Law, Vol. 8, pp. 193-259, 2014.

[11] S. Y. Hong, Argument on the right to be foregotten and the freedom of expression-focused on the press arbitration system,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 2, No. 6, pp. 1-11, 2014.

[12] W. S. Son, Verschuldensunabhaegiger Folgenbeseitigungsanspruch nach rechtswidrigen Aeusserungen im Internet－Anmerkung von KOG 28. 3. 2013. 2010Da60950, Journal of Anam Law, Vol. 44, pp. 623-651, 2014.

[13] M. S. Hong, Delete: The Virtue of Forgetting in the Digital Age, Journal of Culture and economics, Vol. 14, No. 2, pp. 139-146, 2011.

[14] J. K. Koo, A Note on the Right to be Forgotten in Korean Legal System-From the Comparative Point of View of Public Benefit and Private Interest, Sogang Law Review, Vol.5, pp. 137-157, 2013.

[15] J. W. Moon, The Korean Way of Balancing Two Fundamental Rights, the Right to Be Forgotten and the Right to Know, Media and Law, Vol. 10, No. 2, pp. 1-32, 2011.

[16] M. S. Kim, S. T. Kim, A Study on Intention to Accept the Right to be Forgotten Associated with Exposure of Personal Data, Journal of Korean Journalism, Vol. 58, No. 2, pp. 307-337, 2014.

[17] A. Messenger, What Would a 'Right to Be Forgotten' Mean for Media in the United States?, Communications Lawyer : Publication of the Forum Committee on Communications Law, American Bar Association, pp. 29-37, 2012.

[18] S. Daley, Europeans fight for 'right to be forgotten' on the web, Edmonton Journal, B.7, Aug 14, 2011.

[19] EU's right to be forgotten threatens your right to know, USA TODAY, May. 15, 2014.

[20] Consumer Watchdog Praises EU's 'Right To Be Forgotten' Ruling As Privacy Victory, U.S. Newswire, 2014 .

[21] M. L. Ambrose, A Digital Dark Age and The Right to Be Forgotten, Journal of Internet Law, Vol. 17, No. 3, pp. 9-20, 2013.

[22] A. Travis, C. Charles, A. Kassam, Europe upholds 'right to be forgotten': Google told it must delete 'irrelevant' personal data on request in test case with far-reaching implications, The Guardian, p. 4, 2014.

[23] C. B. Lee, Explanat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related legislation, Ministry of Administration and Security, pp. 243-272, 2011.

[24] J. S. Woo, Guide lines of the Legal Liability concerning ISP for defamation, Law & Technology, Vol. 5, No. 4, pp. 78-98. 2009.

[25] B. J. Koops, Forgetting footprints, shunning shadows, a critical analysis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in big data practice, SCRIPTed, Vol. 8, No. 3, pp. 229-256, 2011.

홍 숙 영(Hong, Sook-Yeong)

· 1992년 2월 : 이화여대 경제학과 (학사)
· 2007년 2월 : 프랑스국립파리2대학학교 언론대학원 (박사)
· 2007년 3월 ~ 현재 : 한세대학교 미디어영상학부 부교수
· 관심분야 : 미디어콘텐츠, 언론법
· E-Mail : marylou@naver.com